□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도서관간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도서관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도서관직원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회원 대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 도서관(이하 "회장관"이라 한다)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국가 대학도서관정책에 대한 건의와 연구
② 도서관간의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사업
③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
④ 도서관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⑤ 도서관 직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⑥ 도서관 관련 조직 및 단체와의 협력 사업
⑦ 회보, 편람, 정책자료 등의 간행물 출판
⑧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관은 본회의 회칙에 동의하는 국공립대학도서관 중에서 본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본회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얻은 도서관으로 한다.
② 신입 도서관이 정식 회원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납부와 동시에 회원자격을 부여받는다.
③ 본회의 회원관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2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도서관은 회원자격을 중지한다.
④ 법률이나 기타 이유로 인하여 본회 회원관의 정체성(국공립기관으로서의)이 바뀌어도 해당 회원관이 본회의 탈퇴를 원하지 않는 한 회원자격은 유지된다.
⑤ 회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본회의 회원관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재가입을 원할 시에는 본회 이

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회원관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2명

③ 이사 20명 내외

④ 감사 2명

⑤ 사무국장 1명

⑥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8조(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의 자격과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관의 관장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기관이사와 실무이사로 구성하며 구성비는 60% 대 40%로 한다. 기관이사는 회원관의 관장 중에서, 실무이사는 회원관의 과장 또는 팀장 이상 직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감사는 회원관의 관장 혹은 과장 또는 팀장 이상 직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관의 과장 또는 팀장 이상 직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는 회장 권한을 대행한다. 부회장 중에서 회장 직무를 대행할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이사는 본회의 중요 업무를 심의·의결하며,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직을 대행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경리와 회무를 감사하고,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각종 회의 및 행사 활동을 지원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회의의 종류) 본회에는 안건의 발의, 심의, 혹은 의결을 위해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두며,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절 총 회 -

제12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 회원관의 1/3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정기총회는 14일전까지, 임시총회는 7일전까지 회원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총회의 의장)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직무를 대행할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②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사업 계획의 승인
⑤ 이사회의 부의사항
⑥ 신입회원관의 가입 승인
⑦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의결정족수와 의결권의 대리)

① 총회는 재적 회원관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관은 본회가 정한 서면위임장에 의해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또한 3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총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을 수반하는 사안으로 회원관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2절 이사회 -

제17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그리고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혹은 이사 1/3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사회의 의장)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직무를 대행할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① 총회가 위임한 사안
② 총회에 부의할 사안
③ 신규 사업의 심의
④ 예산과 결산 심의
⑤ 각종 규정의 심의
⑥ 각종 포상의 심의
⑦ 기타 중요한 사안

제20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와 의결권 대리)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한 이사는 본회가 정한 서면위임장에 의해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또한 3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안 중에서 경미한 사안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절 운영위원회 -

제21조(운영위원회 구성과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그리고 회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한다(이때 이사는 기관이사와 실무이사를 균형있게 위촉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함께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소집된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

①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
② 이사회에 부의할 사안
③ 신규 사업 계획의 수립
④ 예산과 결산(안)의 수립
⑤ 각종 규정과 포상 관련 사안
⑥ 기타 협회 운영에 관한 사안

- 제4절 분과위원회 -

제2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의 사업추진을 위해 회장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한 제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5장 사 무 국

제24조(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① 본회는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을 통해 회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와 업무처리를 위한 제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국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5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기부금 또는 찬조금
③ 기타 수입금

제2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당해년도 7월 1일부터 6월 30일로 한다.

제27조(예산편성) 본회의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 1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다만 총회의 승인 전에는 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7장 포 상

제28조(목적)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현격한 공로가 있거나 본회의 회원관에서 장기한 근속한 자에게 치사와 격려의 목적으로 포상한다.

제29조(대상과 자격) 포상의 대상과 자격은 다음 각 항의 해당자로 한다.

① 공로상: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본회 회원관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자

② 감사패: 본회 또는 회원관의 발전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

제30조(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1통 (제29조 1,2항 해당자)

② 경력증명서 1통 (제29조 1항 해당자)

제31조(심사 및 시상)

① 대상자는 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② 시상은 총회 또는 정기 세미나 등에서 행하며,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③ 부상의 기준과 범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2조(보칙)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협의회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 정 1979. 05. 25(제28차 총회)
1차 개정 1981. 05. 08(제30차 총회)
2차 개정 1982. 06. 18(제32차 총회)
3차 개정 1984. 06. 29(제36차 총회)
4차 개정 1989. 07. 07(제41차 총회)
5차 개정 1992. 07. 11(제44차 총회)
6차 개정 1997. 07. 14(제49차 총회)
7차 개정 2001. 12. 21(제53차 총회)
8차 개정 2010. 06. 22(제62차 총회)
9차 개정 2012. 07. 01(제64차 총회)
10차 개정 2013. 06. 27(제65차 총회)